

이 사 회 회 의 록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 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2022년 9월 15일(목) 11:00
2. 장 소: 법인 이사장실
3. 참석이사: 이재현, 김기유, 조진환, 임형준,
김오영, 박범수, 박기혁
4. 불참이사: 없음
5. 안 건

회의소집통보일자: 2022. 9. 6

이사정수: 7명 재적이사: 7명

- ① 1호의안: 법인정관 변경의 건
- ② 2호의안: 2022학년도 신임교사 공개채용 계획의 건
- ③ 3호의안: 2022학년도 3개교 1차 추경예산 심의 건

이사장 이재현 :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본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11:00)
부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제1호의안인 법인정관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의안: 법인정관 변경의 건]

국장 1호의안인 법인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법인정관 변경은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울시교육청 정관변경 지침
에 의거하고 현재 정관의 구 용어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은 첫째, 임원의 결격사유 및 선임제한 기안을 5년에서 10년으로, 3년에서 6년으
로 연장하고, 둘째, 교원 임용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하고, 셋째,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넷째, 교원의 징계에서 위
원의 정수 및 구성 기준, 성비위 교원 징계처분 시 피해자에게 통보, 징계의결서를 관할청
에도 송부, 재심의 및 징계처분이며, 다섯째, 사무직원 임용 정의에 정직 및 강등 추가, 여
섯째,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를 준용, 일곱째, 학교운영위원회
의 역할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규정,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정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며, 그 외 내부적으로 중학교의 일반직원 증원과 구용어 변경입니다. 이상 법인정관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재현: 이사님들께서는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첨부된 자료의 정관변경안은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과 법인실정에 맞도록
교육청 지침의 표준안을 적용하여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변
경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사 동의합니다.

이사 동의합니다.

이사 동의합니다.

이사 동의합니다.

이사 동의합니다.

이사 일동: 전원 동의하다.

박기혁 박범수

임형준

이사장 이재현: 1호의안은 참석하신 이사님들의 전원 동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호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호의안: 2023학년도 신임교사 공개채용 계획의 건]

국장 : 2호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용교의 교원수급 인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화여자고등학교는 2022학년도 36학급을 운영하며 교원수급계획에 의거 국어, 윤리, 물리, 미술, 전문상담, 보건과목에 각각 1명씩, 총 6명을 채용하고자 제의합니다. 현재 부족시수에 대해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며 2023학년도에는 여섯 과목의 정교사를 채용하여 교원수급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6명의 정교사를 채용한다면 자율형사립고에 걸맞는 교육과 학사운영에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화여자중학교는 2023학년도에 학급수는 총 27학급으로 전체 수업시수와 현 교사를 기준으로 확정한 2023학년도 교원수급계획에 의거 미술과목의 1명을 채용할 것을 제의합니다. 특히, 미술교사 전형은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5배수의 합격자를기준으로 면접 등 전형을 실시하여 채용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전형은 앞서 말씀드린 세화여중 미술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해선 1차 필기시험을 통해 우선 적임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2차 수업실연, 3차 학교면접, 4차 재단면접의 절차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이재현: 2호의안에 대해 이사님들께서는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각 학교의 교원수급은 채용교 교장선생님들과 사무국에서 잘 검토하여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세화여중 미술교사는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위탁하는 일정입니다. 그 외 과목교사에 대해서는 전형에 차질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사 동의합니다.

이사 동의합니다.

이사 동의합니다.

이사 동의합니다.

이사 동의합니다.

이사 일 동: 전원 동의하다.

이사장 이재현: 2호의안은 참석하신 이사님들의 전원 동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호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호의안 : 2022학년도 3개교 1차 추경예산 심의 건]

국장 : 3호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화고등학교 1차 추경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88,021천원 증액된 8,823,691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1,227,83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으로는 학부모부담수입은 191,279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활동수입으로 3,798천원 증액 편성하여 195,077천원 증액한 7,217,39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333,727천원 증액한 378,46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보수, 복지 및 역량강화 등 인적자원운용의 감소로 53,267천원 감액한 6,046,28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는 752,241천원 증액한 1,080,150천원으로 편성하고 기본적 교육활동비는 180,429천원 증액한 331,077천원으로 편성하고 선택적 교육활동은 32,037천원 증액한 59,13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교육활동지원은 350,006천원 증액한 636,33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학교일반운영은 26,575천원 증액한 670,703천원으로 편성하

였습니다.

다음은 세화여자고등학교 1차 추경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451,884천원 증액된 10,838,479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1,891,78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 수입으로는 학부모부담수입은 368,910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활동수입으로 108,417천원 증액 편성하여 477,327천원 증액한 7,895,95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82,770천원 증액한 232,77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보수, 복지 및 역량강화 등 인적자원운용의 증가로 60,674천원 증액한 5,766,43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는 1,707,853천원 증액한 2,801,249천원으로 편성하고 기본적 교육활동비는 347,330천원 증액한 498,700천원으로 편성하고 선택적 교육활동은 149,578천원 증액한 308,76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교육활동지원은 165,281천원 증액한 937,35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학교일반운영은 21,168천원 증액한 525,97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화여자중학교 1차 추경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70,282천원 증액된 5,673,73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5,391,85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으로는 학부모부담수입은 108,114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활동수입으로 18,625천원 증액 편성하여 89,489천원 감액한 262,97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18,910천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보수, 복지 및 역량 강화 등 인적자원운용의 감소로 170,817천원 감액한 3,781,44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는 502,455천원 증액한 649,291천원으로 편성하고 기본적 교육활동비는 17,791천원 증액한 406,159천원으로 편성하고 선택적 교육활동은 115,745천원 증액한 229,91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교육활동지원은 173,946천원 증액한 310,96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학교일반운영은 31,161천원 증액한 294,24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학교 재무활동은 1천 원 증액한 1,71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이재현: 이사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 3개교 1차 추경예산서를 살펴본 바 대체적으로 시설개선과 학생교육활동,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비에 많은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예산 운영에 대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사 : 동의합니다.

이사 일 동: 전월 찬성하다.

이사장 이재현: 3호의안은 참석하신 이사님들의 전월 동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질문사항이나 기타 협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일 동: 없습니다.

이사장 이재현: 금일 법인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서명은 김오영 이사, 박범수 이사, 박기혁 이사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12:30)

<첨부> 신구대조표 1부

상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 날인하다.

박기혁 18/11/29

이재현

2022년 9월 15일

이 사 장 이 재 현 *이사장이재현*

이 사 김 기 유 *이사김기유*

이 사 조 진 환 *이사조진환*

이 사 임 형 준 *이사임형준*

이 사 김 오 영 *이사김오영*

이 사 박 범 수 *이사박범수*

이 사 박 기 혁 *이사박기혁*

<첨부> 신구대조표

현행(舊)	변경(案)	비고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의지)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하고,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정 -교육청지침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이하생략~ 의 결로 확정하고 학교장이 집행하고 법인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이하생략~ ③ 제1항의 교비회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수정 -교육청지침
제16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이하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거나에는 제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제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16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이하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거나에는 제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제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	수정 및 신설 -교육청지침 수정 -사립학교법 제21조
제17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이하생략~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17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이하생략~ ③ 삭제<2022.9.15.>	삭제 -제21조 제2항과 중복(교육청지침)
제22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이하생략~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하생략~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제22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이하생략~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하생략~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수정 -교육청지침
제34조(임용) ~이하생략~ ④ 제2항의 교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하생략~ ⑤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 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자로 제한할 수 있으며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과 제8항에 따라 위탁	제34조(임용) ~이하생략~ ④ 제2항의 교원을 신규 채용함에 있어서는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이하생략~ ⑤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 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자로 제한할 수 있으며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과 제8항에 따라 위탁	수정 및 신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사립학교법 제21조

~이하 생략~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는다.

제34조의 5(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이하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사립학교법 시행령」 준용)로 정한다.

제35조(휴직의 사유) ① ~이하 생략~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7.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만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이하 생략~
 ② 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38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이하 생략~ 다만, 흙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제3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34조의 5(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이하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35조(휴직의 사유) ① ~이하 생략~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7.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만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이하 생략~
 ② 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38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이하 생략~ 다만, 흙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제3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39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혐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혐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수정

-교육청지침

수정

-교육청지침

<p>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조사 중인 사람으로서 ~이하생략~</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p> <p>~이하생략~</p> <p>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p>	<p>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조사 중인 사람으로서 ~이하생략~</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p> <p>~이하생략~</p> <p>⑦ 제2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p>
<p>제41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이하생략~</p> <p>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 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41조의 5(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41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이하생략~</p> <p>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 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제41조의 5(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교장 제외)의 임용(징계 포함)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신규교원의 임용에 따른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4. 교감임용후보자 및 자격연수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교원의 보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6. 교원의 포장 및 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인사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8. 자체 교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건의한 사항으로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9. 기타 학교의 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41조의 6(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p> <p>~이하생략~</p> <p>제41조의 8(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p> <p>② 인사위원회는 제적위원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41조의 6(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전체 교원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p> <p>~이하생략~</p> <p>제41조의 8(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교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p> <p>② 인사위원회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41조의 9(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담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41조의 9(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해당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수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 4 -교육청지침</p>	<p>수정 -교육청지침</p>
---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41조의 10(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하생략~

제4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의사장이 임명한다. ~이하생략~

③ 위원 중 1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외부위원을 포함한다.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담해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③ 회의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제41조의 10(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하생략~

제4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하생략~

③ 위원 중 최소 2명 이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외부위원을 포함한 다.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도는 사람
-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외부위원에 제3항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⑤ 특정 성(性)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44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임하는 경우)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한다. ~이하생략~

제45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담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 제66조의 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3조의 4
-교육청지침

수정 및 신설
-사립학교법
제62조
제66조의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 10

수정
-교육청지침

수정

-교육청지침
-교육청지침
-사립학교법
제62조
-사립학교법
제66조의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 10

제44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임하는 경우)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표하여 업무를 통괄한다. ~이하생략~

제45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요구받거나 징계의결 제3항의 제2호 제3호 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담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 제66조의 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 10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 10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 10

제46조(재적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실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담행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8조(징계의결) ~이하생략~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관자에게 통고하여 약 한다.
~이하생략~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6조(재적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담행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8조(징계의결) ~이하생략~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관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
~이하생략~

⑤ 임용관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 2(징계의결의 지침) ① 임용관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관 제48조 및 「사립학교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관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사립학교법」 제62조의 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제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임용관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제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자체 없이 해당 징계심의위원회에 제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임용관자가 징계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관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이하생략~

제66조(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이하 "일반 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경후견인 또는 피학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거나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수정 및 신설
-사립학교법
제66조

신설
-사립학교법
제66조의 2

수정
-교육청지침

제66조(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이하 "일반 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경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거나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수정
-사립학교법
제70조의 3

<p>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p> <p>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p> <p>6. 범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p> <p>7. 이 법의 이 법의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p> <p>~이하생략~</p> <p>(3) 제자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다만, 제1항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제9호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제3호에 따른다.</p> <p>제67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선발,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하여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시구칙으로 정한다.</p> <p>~이하생략~</p> <p>④ 사립학교법 제70조의 3에 의거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7조를 준용하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p> <p>제71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범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p>	<p>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6. 범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p> <p>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p> <p>~이하생략~</p> <p>(3) 산재 <2022.9.15></p> <p>제67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대우직원 선발, 명예퇴직을 말하며 임용권자는 공개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일반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고 공개전형의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른다.</p> <p>~이하생략~</p> <p>④ 「사립학교법」 제70조의 4에 따라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일반직원”으로 본다.</p> <p>제71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 5, 제70조의 6, 제70조의 7을 따르되, 그 밖의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며 일반직원의 징계위원회는 범인에 따로 두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범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p> <p>제80조(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이하생략~</p> <p>④ 지역위원회는 ~이하생략~, 학부모위원회 또는 교원위원회는 제80조의 1 제1항의 선출관리위원회에 추천할 사람의 공개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하생략~</p> <p>제84조(위원회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p>
<p>제84조(위원회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p>	<p>수정 - 사립학교법 제70조의 3</p> <p>수정 - 사립학교법 제70조의 5 - 사립학교법 제70조의 6 - 교육청지침</p> <p>수정 - 초중등교육법</p>

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시행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자체없이 운영위원회와 범인 이사회,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86조의 2(소위원회 설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안전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 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② 안전지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제103조(사학운리강령 준수) ① 이 법인은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운리강령”을 준수한다.

② 이 법인 및 유자·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운리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제1항 및 제85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자체없이 운영위원회와 범인 이사회,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86조의 2(소위원회 설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안전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 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② 안전지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03조(첨령의무)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제1항 및 제85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자체없이 운영위원회와 범인 이사회,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104조(행동강령) 학교법인 임직원, 학교장과 교직원의 행동강령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세화여자중학교 사무조직 정원

총계

5명

일반직(교육행정) 6급 1명
일반직(교육행정) 8급 1명
일반직(시설관리) 9급 3명

일반직(교육행정) 6급 1명
일반직(교육행정) 8급 1명
일반직(교육행정) 9급 2명
일반직(시설관리) 8급 1명
일반직(시설관리) 9급 1명

수정
-사립학교법
제72조의5
부칙
신설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제72조의4
부칙
수정
-교육청
사무직원
실무직원
(증원)

별표2 세화여자중학교 사무조직 정원

총계

6명

일반직(교육행정) 6급 1명
일반직(교육행정) 8급 1명
일반직(교육행정) 9급 2명
일반직(시설관리) 8급 1명
일반직(시설관리) 9급 1명